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데이터처에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2명(6급 2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6.7.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(법률 제21446호, 2026.3.5. 제정, 2026.7.1. 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 호남지방데이터청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을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,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7. 1. ~ 7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호남지방데이터청의 관할구역란 중 “광주광역시,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, 전북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목포사무소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, 신안군, 무안군, 영암군, 진도군
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2의 순천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“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하고, 같은 표 강진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“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하며, 같은 표 보성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“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705”를 “707”로, 일반직 계 “704”를 “706”으로, 행정주사·통계주사·공업주사·전산주사·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“206”을 “208”로 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705”를 “707”로, 일반직 계 “704”를 “706”으로, 행정주사·통계주사·공업주사·전산주사·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“208”을 “21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]

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	계	·	·	·	·		
			<u>705</u>	<u>707</u>		+2	
일	반	·	·	·	·		
직	계	·	·	·	·		
			<u>704</u>	<u>706</u>		+2	
		·	·	·	·		
		·	·	·	·		
행	정	주	·	·	·		
사	·	통	·	·	·		
·	계	주	·	·	·		
·	사	·	·	·	·		
공	업	주	·	·	·		
사			<u>206</u>	<u>208</u>		+2	
·	전	산	·	·	·		
·	주	·	·	·	·		
농	업	주	·	·	·		
사	또	는					
사	서	주	·	·	·		
사			·	·	·		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4]

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	계	·	·	·	·		
			<u>705</u>	<u>707</u>		+2	
일	반	·	·	·	·		
직	계	·	·	·	·		
			<u>704</u>	<u>706</u>		+2	
		·	·	·	·		
		·	·	·	·		
행	정	주	사	·	통	계	주
		사	·	공	업	주	사
·	전	산	주	사	·	농	업
		주	사	또			
는							
사	서	주	사				
		·	·	·	·		
		·	·	·	·		